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264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 정 이 유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제7조의2제1항을 현행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동 개정조례안 해당 조문을 현행과 같이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관련한 주정차 금지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교통위원회안)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주변과**----------.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 략)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